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. 12. 4 선고 2022가단580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

담당변호사 김대환

피 고 B교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

담당변호사 김무식

변 론 종 결 2024. 11. 13.

판 결 선 고 2024. 12. 4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7.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22.

3. 25. 체결된 매매예약을 37,85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7,850,000원

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11. 5.경 유한회사 C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한다)과 사이에, D 공사와 관련하여, 공사대금을 561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, 공사기간을 2020. 9. 9.부터 2021. 1. 10.까지로 정한 공사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공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나.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으나, 이 사건 회사는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.다. 이 사건 회사는 2022. 4. 29.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을 87,850,000원으로 확인하면서, 87,850,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, 이를 2022. 7. 29.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(법무법인 E법률사무소 증서 2022년 제142호)를 작성하였다.라. 이 사건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에게, 2022. 3. 25.경 2022. 3. 25. 자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, 2022. 5. 18.경 2022. 3. 7. 자 매매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37,85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,8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87,85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추가로 50,000,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,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 37,850,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 37,850,000원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인정 여부

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위수현

별지